

의안번호	제 118 호
의 결 연 월 일	2015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청북도교육감
제출연월일	2015년 1월 19일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8
----------	----

제출연월일 : 2015. 1. 19.

제출자 : 충청북도교육감

1. 제안이유

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책정된 한시정원을 삭제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한시기구인 방과후학교지원단의 존속기한 도래에 따라 한시정원을 삭제함

1)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표 개정: 방과후학교지원단 행정 4급△1(안 별표 4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별첨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대비표: 별첨

2) 입법예고(2014. 12. 26. ~ 2015. 1. 8.): 특기할 사항 없음

3) 규제심사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
4) 부패영향평가: 해당 없음

5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 없음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4]

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표(제5조 관련)

단위기관	종류	직렬	직급	정원	존속기한	비고
본청	일반직	행정	4급	1	2015.8.31.	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
		교육행정	5급	1		
			6급	1		
			7급	1		
교육지원청	일반직	교육행정	8급	17	2016.6.30.	위 프로젝트(Wee Project) 사업 전문상담사
합계				21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						개정안						
[별표 4]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표(제5조 관련)							[별표 4] 지방공무원의 한시정원표(제5조 관련)						
단위기관	종류	직렬	직급	정원	존속기한	비고	단위기관	종류	직렬	직급	정원	존속기한	비고
본청	일반직	행정	4급	1	2015.2.28.	방과후학교지원단	본청	일반직	행정	4급	1	2015.8.31.	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
				1									
		6급	1	6급	1								
		7급	1	7급	1								
		교육지원청	일반직	교육행정	8급	17			2016.6.30.	위 프로젝트(Wee Project) 사업 전문상담사	교육지원청		
합계				22			합계				21		

관계법령

□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[시행 2014.6.11.] [대통령령 제25375호, 2014.6.11., 타법개정]

제15조(정원의 관리) ① 교육감은 조직 간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·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② 교육감은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정원의 적정 여부와 정원의 증원 및 감축 현황을 조사·확인하여야 하고, 그 조사·확인 결과를 기관별·기구별·종류별·직렬별·직급별로 종합하여 작성한 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교육감은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시·도 교육청의 정원의 범위에서 정원을 자체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와 같다.

1.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업무의 필요성이 감소한 분야의 인력
2. 유사하거나 중복된 기구 또는 지나치게 세분화된 기구에 소속된 인력
3. 업무의 성질상 법인이거나 그 밖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분야의 인력

제18조(한시정원) ① 교육감은 긴급히 발생하는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한시정원은 그 한시기구의 존속기간이 끝나는 날에 소멸된다.

③ 한시정원은 한시정원이 아닌 정원으로 상계(相計)하여 조정할 수 없다.

④ 한시정원과 직급별 정원은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⑤ 한시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한시정원만을 두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의 업무량이 있어야 한시정원을 책정할 수 있다.

⑥ 제5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⑦ 제6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간 연장은 사업추진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차례만 할 수 있다.

제20조(정원의 규정) ① 시·도 교육청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1.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시·도의회 사무처 정원
2. 본청, 교육지원청, 직속기관,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 정원(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)
3. 교육전문직원의 정원

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종류별·직급별로 구분하여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1. 5급 이하 직급별 정원
 2. 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
 3. 교육전문직원 중 제1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교육전문직원을 제외한 정원
-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. 다만,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.
- ④ 직렬별 정원(「지방전문경력관 규정」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)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13조제2항에 따른 단위기관별로 해당 시·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